
장학금 규정



장훈고등학교

장학금 규정

(2025.04.03. 전부 개정)

생활복지부

제1조(목적 및 대상) 본 규정은 장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학생의 자격

본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수혜자의 기본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나. 교내 행사의 참여 학생 중 우수한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

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게 성실하게 면학에 전념하는 학생

라. 장학금 수여 기반 또는 단체가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거나 교내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마.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직전 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학비의 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제2조(장학위원회)

가. 장학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복지부장, 각 학년 부장, 장학 업무 담당 교사로 구성하되, 장학금 내용에 따라 교과 부장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장학위원회는 장학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 교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의, 2) 장학금 내역과 지급시기 심의, 3) 외부 단체 또는 개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을 시 대상자 심의, 4) 기타 장학금과 관련 있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장학생 추천)

가. 장학생 추천은 반드시 담임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나. 학년의 장학 담당 교사는 장학생을 선정하여 생활복지부에 회의록과 장학생 인적 사항을 전달한다. (추천 시 가족사항, 가정경제수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 장학위원회는 장학 담당 교사가 보고한 장학금 추천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라. 장학 담당 교사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회의 성립 및 의결

장학생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액수를 결정 할 때는 위원 2/3이상 참여로 회의가 성립되며,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기준

가. 2025년에 졸업하는 학생은 본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할 때 입학한 학생으로 2022학년도 입학생의 장학생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내신 성적 3.01%~5.00% 이내 입학 → 5% 이내 졸업 : 2,000,000원
내신 성적 5.01%~10.00% 이내 입학 → 10% 이내 졸업 : 1,000,000원

나.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본교는 일반고로 전환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함. 이에 자사고 때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25학년도의 본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장학생 수와 장학금 액수는 학교의 연중 장학금 수여 예산 범위를 감안하여 조절할 수 있다.

라. 한 학생의 장학금의 중복수혜 여부는 장학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학생 1인이 1회 지급받는 교내 장학금의 최대 금액은 300,000원 이하이다.

2) 학생 1인이 학년 당 받는 총 누적 교내 장학금은 1,000,000원 이하로 지급하되 장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교외 장학금을 1,000,000원 이상 받은 학생의 교내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는 장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마. 다음의 경우, 학교장이 인정할 때에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1) 지급받은 교내 · 외 장학금의 총 금액이 1,000,000원 이하일 때

2) 특정한 개인의 사유, 가정 형편 등 특별한 조건으로 장학생 추천을 요할 경우

3) 교내 인재 장학금 중 여러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경우

제6조(장학금 지급 방법) 교내 장학금은 스쿨뱅킹 계좌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예정 날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지급 기관의 장학금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기간)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회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졸업 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장학생 지도)

각 학급 담임교사는 장학생으로 하여금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한다.

제9조(장학금 종류)

가. 교내 장학금

연 번	장학금 명칭	대상자	금액
1	성적우수장학금	학년별 해당 학생	각 300,000원
소계			3,000,000원
2	성적향상장학금	학년별 3명	각 100,000원
소계			900,000원
3	학력평가우수장학금	전교생 중 해당 학생	2,000,000원 (학생 1인당 100,000원)
4	학년부장장학금	학년별 추천 학생	학년별 각 500,000원 내에서 사용
소계			1,500,000원
5	공로장학금	전교생 중 추천 학생	3,500,000원 내에서 사용
6	재능장학금	교과별, 프로그램별 우수자	5,000,000원 내에서 사용
7	선행장학금	전교생 중 추천 학생	1,000,000원 내에서 사용
8	인재장학금	3학년 6명	600,000원 (학생 1인당 100,000원)
9	희망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실한 학생	1,500,000원 내에서 사용
10	기숙사장학금	장학학사 학생 중 선정	기숙사비 면제 혜택 또는 1,000,000원
합계			총 20,000,000원

1) 성적우수장학금 :

2024년도 입학생	학년 말 정기고사 내신 성적의 등급 평균이 우수한 순서대로 지급하되 평균 등급이 1.0~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동점자는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등급 평균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2025년도 입학생	학년 말 정기고사 내신 성적의 등급 평균이 우수한 순서대로 3명에게 지급 동점자는 1.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등급 평균이 우수한 자 2. 모의고사 누적 평균 백분위가 우수한 자 3. 교내 · 외 지급받은 장학금이 있을 시 총액이 더 적은 자 순으로 정함.

2) 성적향상장학금 : 1학기 종합 성적 대비 2학기 종합 성적 등수가 향상된 정도를 비교하여 수여. 동점자는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등급 평균이 우수한 자부터 장학생 선정

- 단, 성적우수, 성적향상 장학금의 장학생 선정은 다수의 동점자 발생 시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3) 학력평가우수장학금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인 자

(단, 탐구영역은 한국사를 제외한 두 과목의 평균으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버림)

4) 학년부장장학금 :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학년부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모범 학생

5) 공로장학금 : 학생회, 축구부, 방송반, 교내질서도우미 등 기타 교내활동 도우미 학생 중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6) 재능장학금 : 교내 교과별 프로그램, 체육 특기, 예체능 분야, 교내 행사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재능을 나타낸 학생 (각 교과별,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

7) 선행장학금 : 가정 또는 학교 및 사회의 모범생으로 자타가 인정할 만한 선행을 베푼 학생

8) 인재장학금 : 3개년 학업 성적 우수자 3명, 3개년 학교 생활 우수자 3명에게 각각 지급 (3학년에만 해당)

9) 희망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

10) 기숙사장학금 :

① 기숙사비 면제 혜택 (단,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며 성적이 기준 보다 내려가거나, 벌점을 받거나, 중도 퇴실 시, 퇴실 후 재입사해도 장학생 제외)

24년 입학생까지 : 입학 당시 상위 성적 10%이내, 총 4명 면제

25년 입학생부터 : 장훈학사 학생 중 학기말 내신 성적 1.0~1.9 중에 해당하며 기숙사 생활이 성실하고 모범이 되어 사감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1~3명 선발하여 면제

② 기숙사 자치위원회 학생 중 성실하게 봉사한자 선발하여 학년말에 장학금 지급
나. 외부 장학금

1) 선발 의뢰 기관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2) 특별한 의뢰 기준이 없을 때는 본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 한다.

(단, 학년 내부 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로 추천된 경우 장학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 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장학위원회 회의 결과를 따른다.